

공 시 송 달

- 직권폐전예고 공고 -

우리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「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0조 ③항(급수폐전)」에 의거하여 직권폐전예고를 하였으나, 소유주 소재지 폐문(공가)으로 인한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」 및 「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「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청취)제3항」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(051-669-5362)에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전 조치하겠습니다. ※ 폐전 후 신규 급수전 신청 시 해당 구경별 비용 발생

1. 공 고 명 : 직권폐전예고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7. 1. ~ 7. 15.(15일간)
3. 공시송달(직권폐전 예고) 대상 수용가 내역

(단위:원)

구분	고객번호	고객명	소재지	구경	구경 (mm)	체납금액 (체납횟수)	급수전 상태	비고
1	190527-100 (우2동)	우2동장 (공동수도)	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길 164 맞은편	공동수도	20	-	급수중지	장기 미사용 및 향후 사용수요 없음
2	204842-100 (반송1동)	하*현	아랫반송로69번길 12-13	가정용	15	65,760원 (25회)	정수	폐문부재 장기 미검침 및 미사용

2026. 7. 1.

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해운대사업소장

